2026학년도 제8차 평의원회 회의록

회 의 명	2026학년도 제8차 평의원회
일 시	2026. 10. 21.(수) 17:00
장 소	대학본부 2층 208호 회의실
의 안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6건
심의안건	1. 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교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부경대학교 경영대학부설 경영교육혁신센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5. 국립부경대학교 부경플래그십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규정안 6. 국립부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회의결과	1.「국립부경대학교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의 - 원안대로 심의 통과
	2.「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교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의 - 원안대로 심의 통과
	3.「부경대학교 경영대학부설 경영교육혁신센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심의 - 원안대로 심의 통과
	4.「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심의 **<심의 보류> ※ 내용 보완 후 재심의** 가. 안 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 구성 재검토 나. “교수 단체”를 “교수회”로 명확화 다. 인권센터장 임명 자격을 교수 직급의 전임교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검토

<table>
<tr><td></td><td colspan="2">5.「국립부경대학교 부경플래그십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규정안」심의
〈수정의결〉
가. 안 제4조제3항 자구 수정(“센터 또는 사업단” → “연구소, 센터 또는 사업단”)
나. 안 제10조 연구정책위원회 기능에 혁신원 산하 조직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추가
다. 안 제11조제4항 제척 사유를 호로 구분(대표팀 선정 심사 대상 팀에 참여한 경우, 스타트랙 교수 심사 대상인 경우)
라. 안 제7조제4항 자구 수정(“별표 1” → “별표 2”)</td></tr>
<tr><td></td><td colspan="2">6.「국립부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심의
〈수정의결〉
가. 안 제30조제1항가목 자구 수정(“직업력 및 가족력” → “질병력 및 가족력”)
나. 현행 제11조제1항 후단(삭제된 제8조제6항을 준용하는 부분) 삭제</td></tr>
<tr><td rowspan="4">주요발언</td><td colspan="2">「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전부개정규정안」</td></tr>
<tr><td>교무학사
분과위원장</td><td>제13조제2항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지난 제3차 평의원회 의견이 절반 정도만 반영되었다. 당시 의견은 교수회장·직원협의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단체 추천 위원과 센터장 추천 4인으로 구성하는 것이었다. 심의위원회는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므로, 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분리되어야 한다. 교수회장과 직원 대표는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니, 피신고인 보호를 위해서라도 심의위원회에는 들어가야 한다.</td></tr>
<tr><td>안건
설명자</td><td>당연직은 전문성과 객관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심의위원회에 당연직을 둔 타 대학도 거의 없다. 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검증해 심의위원을 추천하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td></tr>
<tr><td>사무국장
(평의원회)</td><td>운영위원회도 위원의 전문성을 평가할 기준이 있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고, 각 단체도 같은 기준에 따라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하자.</td></tr>
</table>

	평의원 (윤진영)	직원협의회는 직원을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다. 직원 단체가 세 곳이 있으므로 “직원 단체가 추천하는”이라는 표현이 맞다.
	평의원 (박혜원)	인권 관련 사안에서 조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 조교도 위원 구성에 포함되어야 한다.
	의장	위원 수가 많아지면 성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수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불분명하니 “교수회”로 명확히 해 달라. 향후 교수노조 등이 생길 경우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무학사 분과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센터장이 맡도록 되어 있어(제9조 제3항) 결국 센터장에게 권한이 집중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피신고 교원 대부분이 정년보장 교수이므로, 센터장은 교육・연구・봉사 경력을 충분히 갖춘 교수 직급의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안건 설명자	센터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부교수 이상 또는 외부 전문가로 되어 있다. 타 대학도 부교수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임명된 센터장의 직급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의장	심의안건 「국립부경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심의 보류하고, 논의된 사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하겠다.
	「국립부경대학교 부경플래그십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규정안」	
	안건 설명자	제7차 평의원회 재심의 결정 이후 연구혁신전략 TF 논의와 평의원 대상 설명회, 두 차례의 서면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를 1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촉 위원은 단과대학장・원장이 추천하도록 변경했다. - 대표팀 선정 시 발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제척과 이의신청 절차를 추가했다.

		- “성과급”을 “연구장려금”으로 변경하고, 세부 기준은 사전 공개와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2차 서면 의견에 따라 제11조제4항의 제척 사유를 호로 구분해, 스타트랙 교수 심사 대상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수정하고자 한다.
	의장	연구장려금이 발전기금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 연구 인센티브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안건 설명자	당초 발전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다만 다른 재원으로 확보할 수도 있어 규정에 발전기금으로 한정하기는 어렵다. 세부 기준을 사전에 안내할 때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평의원 (안세륭)	학칙에는 연구원에 연구소, 센터 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맞추어 제4조제3항의 “센터 또는 사업단”에 “연구소”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또한 혁신원 산하에 연구소, 센터, 사업단을 두려면 설치·폐지를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상위 위원회인 연구정책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의장	제11조제4항 제척 사유에 대표팀 선정 심사 대상 팀에 참여한 경우뿐 아니라 스타트랙 교수 심사 대상인 경우도 포함되어야 한다.
	안건 설명자	호를 별도로 구분하여 반영하겠다.
	안건 설명자	추가로 별표가 추가되면서 번호가 바뀌어, 제7조제4항의 “별표 1”을 “별표 2”로 수정하고자 한다.
	의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심의안건 「국립부경대학교 부경플래그십연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규정안」은 논의된 사항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
	「국립부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안건 설명자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 바뀌어 방사선작업종사자와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세부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는 개정이다. 분과위원회 검토 의견을 확인한 결과,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두 가지 있다.

<table>
<tr><td rowspan="2"></td><td></td><td>안 제30조제1항가목의 “직업력 및 가족력”은 “직업력”이 중복 기재된 단순 오기이므로 “질병력 및 가족력”으로 수정하고자 한다.
현행 제11조제1항 후단은 이미 삭제된 제8조제6항을 준용하고 있어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자 한다.</td></tr>
<tr><td>의장</td><td>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심의안건「국립부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제안한 사항을 수정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td></tr>
<tr><td>기타
토의사항</td><td colspan="3">○ 수정사항이 있는 안건의 의결 절차 논의
- 간단한 자구 수정은 회의 자리에서 수정의결하고, 문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수정안을 서면으로 검토해 최종 승인하기로 함</td></tr>
<tr><td rowspan="2">참석현황</td><td>참석대상자</td><td>참석인원</td><td>불참인원</td><td>참석률</td></tr>
<tr><td>20명</td><td>14명</td><td>6명</td><td>70%</td></tr>
<tr><td>작 성 자</td><td colspan="3">소속(직책) : 평의원회(주무관) 성명 : 김 유 연</td></tr>
</table>